

글로벌현장실습운영규정

제정 2014.04.01 1차 개정 2014.08.08
2차 개정 2014.12.08 3차 개정 2015.02.01
4차 개정 2022.10.04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우송정보대학(이하 “본 대학“이라 한다.) 글로벌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교육과정 편성 및 학점부여) 글로벌 현장실습 교육과정은 교육 및 실습을 포함하여 12주 이상으로 하며, 학기 중에 시행한다. 또한 이수자에게는 18학점 범위 내에서 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.

제3조(신청자격) 글로벌 현장실습 신청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본 대학 학생으로 2학기 이상 이수하고 누계성적이 B학점 이상, 해당국가의 언어 능력이 일정수준 이상인 자로 한다.
2. 글로벌 현장실습의 신청은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매 학년도 1학기 및 2학기에 할 수 있으며, 해당 학기에 등록한 자로 한다.

제4조(대상자 선발) ①글로벌 현장실습을 희망하는 학생은 [별지 제1호 서식]의 글로벌 현장실습 신청서와 [별지 제2호 서식]의 글로벌 현장실습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②글로벌 현장실습 파견 대상자는 지원 학생 중에서 자체 선발기준, 공인기관의 성적 및 실습기관과 협의된 선발기준에 의거하여 선발한다.

제5조(실습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) ①글로벌 현장실습 실습기관 선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글로벌 현장실습 프로그램이 있거나 글로벌 현장실습 교육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업체를 선정한다.
2. 학생의 전공과 관련이 있는 업체에 우선적으로 파견하되,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.

②현장실습 파견기관과의 협약은 총장과 실습기관장 명의로 체결함을 원칙으로 하며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은 현장실습 주관부서장에게 위임한다. 단, 업무의 상황에 따라 현장실습 주관부서장과 현장실습기관의 주관(담당)부서장 명의로 체결할 수 있다.

제6조(참여제한) 글로벌 현장실습 참여는 재학 중 1회를 초과할 수 없다.

제7조(평가 및 성적부여) 글로벌 현장실습의 평가 및 성적부여는 [별지 제3호 서식]의 글로벌 현장실습 산업체 학생평가서와 지도교수의 평가(사전교육, 실습일지, 과제 보고서 등)를 근거로 학과장이 해당 학기에 신청한 전공과목에 대해 성적을 부여한다.

제8조(학점인정) ①글로벌 현장실습 학점인정 신청은 현장실습 종료 후 15일 이내에 [별지 제4호 서식]의 글로벌 현장실습 학점인정원 및 현장실습 결과 증빙서류를 학과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교무처는 제출된 글로벌 현장실습 학점인정원을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

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학점을 인정한다.

제9조(학생의 의무) 글로벌 현장실습 참여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체류국가의 법규를 준수하며, 학생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일체 하지 않는다.
2. 현장실습 기관의 규정 및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3. 문제가 발생한 경우 즉시 본 대학에 알려야 한다.
4. 근면하고 성실하게 현장실습에 임하여야 한다.
5. 현장실습 기간 중 주간 실습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.

제10조(의무위반자 조치)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학점인정을 불허하며 사안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1. 무단결근 등으로 실습기관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받거나 해고된 자
2. 글로벌 현장실습 교육과정의 분위기를 저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
3. 학생의 신분을 벗어난 행위로 본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

제11조(주관부서) 이 규정의 시행과 관련된 제반사무는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담당한다.

제12조(기타) ①글로벌 현장실습 교육과정 이수자에게는〔별지 제5호 서식〕의 글로벌 현장실습 이수증명서를 발급하여 취업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. <개정 2022.10.4.>

②기타 글로벌 현장실습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의 특례)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중전규정에 대한 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중전의 우송정보대학 인턴십 운영에관한규정은 폐지되는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되, 201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8월 8일부터 시행하되, 2014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 서식]

글로벌 현장실습 신청서

성명(한글)		학번	
성명(영문/한자)	* 과건국의 필요에 따라 영문 또는 한자로 작성		
생년월일	YYYY. MM. DD.	성별	
소속학과		학년	
총 이수학점	학점	평점평균	/ 4.5
어학성적	(시험명)	(점수,등급)	(응시일자) (발급일자)
주 소		E-mail	
휴대폰		비상연락처	() -
희망과건권역		희망국가	
희망업종(영문)		희망업무(영문)	
신청분야		과건학기	학년도 학기

위 사람은 『20 년 글로벌 현장실습』에 참여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20 년 월 일

신청자 성명

(서명)

우송정보대학총장 귀하

[별지 제2호 서식]

글로벌 현장실습 계획서

소속학과(부)		성명	
지원동기			
관심분야 및 중점 학습영역			
향후 취업계획 및 목표			

학생성명 (인)

지도교수 (인)

우송정보대학총장 귀하

글로벌 현장실습 산업체 학생평가서

20 학년도 학기

학과(부) (major)		학년 (year)	
학번 (student no.)		성명 (name)	
실습학기 산업체명 (company)		담당업무 (position(s))	

- 산업체 부서장의 평가의견 -

평가구분 (evaluation item)	의견 (opinion)	성적 (grade)
① 성실성 (sincerity)		/12.5
② 협동성 (cooperation)		/12.5
③ 창의성 (creativity)		/12.5
④ 현장적응 성취도 (achievement)		/12.5
합계(total)		/50

평가자 성명: (assessor's name)	직위: (position)	(인) (signature)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

* 본 평가서는 학기말고사 개시일 이전까지 지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.

[별지 제4호 서식]

글로벌 현장실습 학점인정원

성 명		학과(부)		학 번					
연 락 처	HP:			학 년					
연수국가									
기 관 명									
연수기간	20 . . . ~ 20 . . . (사전 직무교육기간 포함)								
인정학기	학년도 학기								
연번	강좌번호	과목명	학점	성 적					평가 등급
				연수기관		지도교수		계	
				어학 연수	산업체 연 수	사전 교육	보고서		
20점	30점	20점	30점						
1									
2									
3									
4									
5									
6									
7									
8									
계									

[평가성적 구분] 연수기관 평가 50%, 지도교수 평가 50%

※ 어학연수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는 산업체연수 평가를 50점 만점으로 평가

※ 첨부: 출석부, 주간 실습보고서, 연수기관평가서, 종합결과보고서 사본 각 1부

년 월 일

지도교수 : (인)

학과(부)장 : (인)

우송정보대학총장 귀하

글로벌 현장실습 이수증명서

- 학 번 :
- 학과(부) :
- 성 명 :
- 생년월일 :
- 실습기간 : 20 학년도 학기
- 파견국 :
- 실습기관 :

위 학생은 상기와 같이 글로벌 현장실습 과정을
이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.

우송정보대학 총장 ○ ○ ○ (인)